주주 귀하

제 6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
당사 정관 제 17 조에 의하여 제 69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일 시 : 2026 년 3 월 24 일(화) 오전 10 시

2. 장 소 : 포스트타워 10 층 대회의실(서울 중구 소공로 70)

3. 회의목적사항

1) 보고사항

가) 감사 보고 나)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다) 영업 보고 라)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마)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

2) 의결사항

❍ **제 1 호 의안** : 제 69 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❍ **제 2 호 의안**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*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고

- **제 2-1 호 의안** :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
- **제 2-2 호 의안 : 상법개정에 따른 변경**
- **제 2-3 호 의안 :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**
- **제 2-4 호 의안 : 분기 배당 절차 개선**

❍ **제 3 호 의안**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우정섭)

- 후보자 성명/생년월일/사외이사 여부/최대주주와의 관계/추천인/체납사실 여부/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/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

성 명	생년 월일	사외이사 후보자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우 정 섭	1972.05.10	사내이사	해당없음	이사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- 후보자 주된 직업 / 세부 경력 /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

성 명	주된 직업	세부 경력		해당 법인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
		기 간	내 용	
우 정 섭	신세계 지원 본부장	2025~ 2023~2025 2021~2023 2017~2021	(現) (주)신세계 지원본부장 (前) (주)신세계 부문 재무관리본부장 (前) (주)신세계 전략실 재무본부장 (前) (주)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	해당 없음

❍ **제 4 호 의안** :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(최난설헌)

- 후보자 성명/생년월일/사외이사 여부/최대주주와의 관계/추천인/체납사실 여부/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/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

성 명	생년 월일	사외이사 후보자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임원재직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최난설헌	1975.02.18	사외 이사	해당없음	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- 후보자 주된 직업 / 세부 경력 /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

성 명	주된 직업	세부 경력		해당 법인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
		기 간	내 용	
최난설헌	연세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	2024~ 2023~ 2022~ 2015~	(現)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(現)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(現) 금융위원회 법률자문 위원 (現)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	해당 없음

❍ **제 5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**

제 69 기 이사보수한도	제 69 기 집행실적	제 70 기 이사보수한도(안)
70 억원	39 억원	70 억원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는「상법」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:「http://evote.ksd.or.kr」
모바일 주소 :「http://evote.ksd.or.kr/m」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6 년 3 월 14 일 9 시 ~ 2026 년 3 월 23 일 17 시
- 기간 중 24 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공인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6.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7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
2019 년 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,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(명부)계좌주주로 전자 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 년 2 월 23 일

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

주 식 회 사 신 세 계

대 표 이 사 박 주 형

직 인

생 략
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[별 첨]

• 제 2-1 호 의안 :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27 조 (이사의 선임) ③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, 상법 제 382 조의 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	**제 27 조 (이사의 선임)** **③<삭 제>**	-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
부 칙 ①(시행일)이 정관은 2024 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 <신 설>	**부 칙(2026.03.24)** ①(시행일)이 정관은 2026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 ②제 27 조 개정규정은 2026 년 9 월 10 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- 상법 시행시기 ('26.9.10 자)를 고려하여 별도의 부칙으로 마련

• 제 2-2 호 의안 : 상법개정에 따른 변경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28 조 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, 사외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	**제 28 조 (이사의 임기)**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, 독립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	- 사외이사 명칭 변경
제 36 조의 2 (위원회)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 1. 감사위원회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 33 조, 제 34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**제 36 조의 2 (위원회)** ①<좌 동> 1. 감사위원회 2.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- ③ <좌 동>	- 사외이사 명칭 변경
제 38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 ②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한다.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	**제 38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** ①~② <좌 동> ③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,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⑤<좌 동>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	- 사외이사 명칭 변경 -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인원 상향 (1 명→ 2 명)

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 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-감사위원의 선 · 해임시 최대주주의결권 3% 제한 반영
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	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	- 사외이사 명칭 변경
제 38 조의 5 **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)** ①본 회사는 정관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. ②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. ③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	**제 38 조의 5** **(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)** ①본 회사는 정관 제 3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둔다. ②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. ③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한다	- 사외이사 명칭 변경
제 38 조의 6 **(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)**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	**제 38 조의 6** **(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)**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한다.	- 사외이사 명칭 변경
제 19 조 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 **<신 설>**	**제 19 조 (소집지와 개최방식)** ① <좌 동> ②회사는 상법 제 542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.	-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
제 23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회전에 본 회사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	**제 23 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**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	- 대리권 증명 방법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정하고, 서면에 한정 되었던 '(위임장)' 문구를 전자문서에도 적용됨에 따라 삭제함
제 40 조 **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**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 으로서 상법시행령에 서정하는 서류 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	**제 40 조** **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** ①~② <좌 동>	
③감사위원회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 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-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적용

부 칙 <신 설>	**부 칙(2026.03.24)** ③제 28 조, 제 36 조의 2, 제 38 조의 2 제 3 항, 제 7 항, 제 38 조의 5 및 6 개정 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 ④제 38 조의 2 제 6 항 개정 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 ⑤제 19 조, 제 23 조 개정규정은 202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	- 상법 시행 시기 ('26.7.23 자)를 고려하여 별도 부칙마련 - 상법 시행시기 ('27.1.1 자)를 고려하여 별도 부칙 마련

• **제 2-3 호 의안** :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29 조 (이사의 보선)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	**제 29 조 (이사의 보선)** ①<좌 동> ②<삭 제>	- 이사의 임기 명확화를 통한 책임 경영 및 주주충실 의무 강화

• **제 2-4 호 의안** : 분기 배당 절차 개선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 42 조 2 (분기배당) ①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 ②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.	**제 42 조의 2 (분기배당)** ①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말일부터 45 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②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-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 기준일 변경